

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5 ~ 6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5. 8. 17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의무부과 및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항을 삭제함(안 제3조)

나.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항 삭제에 따른 일부 내용 수정(안 제17조제2호)

○ 제3조제1항제2호·제3호에 따른 신고량

⇒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(안 제23조)

○ 제반 ⇒ 모든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하수도법」 제27조

「지하수법」 제7조 및 제8조

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규제삭제(안 제3조)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5. 8. 01. ~ 8. 20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 중 “조례시행규칙”을 “「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」(이하 “조례시행규칙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2항 중 “규칙”을 “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호나목 중 “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”을 “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”을 “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1호 중 “영”을 “「하수도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영, 규칙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”으로 “제반”을 “모든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사용개시 등의 신고)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「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」(이하 “조례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·중지·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</p> <p>2. 지하수·하천수·온천수·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</p> <p>3.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</p> <p>4.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상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경우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.</p> <p>1. 「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」 제19조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</p> <p>2.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경우</p> <p>3. 「하수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</p> <p>4. 「지하수법」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·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·이용의 신고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
<p>제4조(일시사용신고)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,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<u>조례시행규칙</u>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일시사용신고) ----- ----- ----- 「거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」(이하 “조례시행규칙” 이라 한다)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공사시행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<u>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 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,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</u> 3. (생략) ② ~ ⑤ (생략)</p>	<p>제11조(공사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배수설비 준공검사) ① (생략)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사항 및 <u>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 ③ (생략)</p>	<p>제13조(배수설비 준공검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하수배출량의 산정)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. 1. (생략) 2.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. 가. 「지하수법」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·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. 하천수, 온천수,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<u>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</u> 다.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<u>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</u> 3. (생략)</p>	<p>제17조(하수배출량의 산정)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가. ----- ----- ----- 나. ----- --<u>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</u> 다. ----- -----<u>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</u> 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0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(생략)</p> <p>1.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0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3조(분뇨 수집·운반 대행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, 영, 규칙과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군수의 분뇨 수집·운반 등에 관한 조치명령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3조(분뇨 수집·운반 대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-----</p> <p>----- 모든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